

【문40】일부무효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교통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④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 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가족관계등록비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한다.
-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42】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 ②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 쪽이 제출할 수 있다.
- ④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 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관할로 한다.

【문43】신고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구).읍.면의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하는 협의이혼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시(구).읍.면의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④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음을 불문하고 사건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44】사망신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 ②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가 송부된 경우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幼名)을 기재하여 등록부와 일치되지 않은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할 수 있다.
- ④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45】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당사자의 성과 그 부모의 성이 다른 신고는 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 ③ 가호적 취적당시 법률상 부부 아닌 자가 법률상 부부인양 취적신고를 하여 그 가호적이 신고가 되고 1963. 1. 1.부터 그 가호적을 종전 호적법에 따른 호적으로 보게 된 경우 혼인으로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08. 1. 1.부터 새로운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혼인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 ④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이지만,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 포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⑤ 중국 혼인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중국인이 만18세에 이른 때는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적령 미달을 이유로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문46】친양자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 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 사망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③甲남이乙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甲남과乙녀 간 친양자 파양 없이丙남이乙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후 해당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친양자乙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로 새로운 양부丙남만 기재되어야 하고 종전 양부甲남은 말소되어야 한다.
- 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47】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란에는 개명허가 전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문48】다음에 열거한 신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건인가?

- |                                                                                                                                             |
|---------------------------------------------------------------------------------------------------------------------------------------------|
| ㄱ.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br>ㄴ.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br>ㄷ.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br>ㄹ.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

- ① 없음
- ② 1건
- ③ 2건
- ④ 3건
- ⑤ 전부

【문49】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②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는 혼인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 시 변경할 수 있다.
- ③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 중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문50】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검색 기능,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개념이다.
- ②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③ 위 ②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 ④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하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는 같아야 한다.
- 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23일 시행

#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 <제 2 교시>

|      |      |                                     |
|------|------|-------------------------------------|
| 문제책형 | 시험과목 |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
| ②    |      |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지사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8. 6. 23.(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8. 6. 25.(월) 12:00 ~ 2018. 6. 27.(수) 17:00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8. 7. 12.(목) 12:00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